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 마. 특별법에서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삭제).
-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 우대함(안 제23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관련 사업 지원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우선구매 관련 지원
4. 에너지특화기업의 사업화 촉진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
5.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담기관과 그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보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는 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개최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 및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4. 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경우 설비 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의 가산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2 <신 설></u>	<u>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u> <u>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정한</u> <u>“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u> <u>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u> <u>같다.</u> <u>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u> <u>및 변경 등의 지원</u> <u>2. 법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 등에</u> <u>대한 우선 지원 관련 사업 지원</u> <u>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우선구매</u> <u>관련 지원</u> <u>4. 에너지특화기업의 사업화 촉진</u> <u>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u> <u>5.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인력양성</u> <u>기관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u> <u>지원</u> <u>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u> <u>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u> <u>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3조의3 <신 설></u>	<u>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u> <u>제5조의2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u> <u>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u> <u>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u> <u>(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u>

제10조의2 <신 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담기관과 그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보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는 년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개최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신설

③ 신설

② 제1항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 및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

1. - 4. 생략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4. 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
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
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
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23조 <신 설>

제15조 <삭 제>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
로 이전한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
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
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의 가산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
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연 락 처	(044) 203 - 5156